

## 1. 개정이유

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운동용품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별적 언어를 바로잡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장애인용 운동용품에 대한 표현 명확화(안 별표 2의2)
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‘스포츠용 보조기기’를 표기함.

나. 장애인 차별적 용어 순화(안 별표 2의2)

법령 용어 중 ‘장애자’를 ‘장애인’으로 개정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보건복지부, 관세청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8. 8. ~ 8. 1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기획재정부령 제 호

##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2 제1호(6) 중 “장치”를 “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(5) 중 “심신장애자가”를 “심신장애인이”로 하며, 같은 란 제2호(6) 중 “심신장애자가”를 “심신장애인이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(제42조 관련)

1.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

가. 「장애인·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다음의 것

- (1)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, 체중계, 혈압계
- (2) 점자교육용 보조기기
- (3) 점자 읽기자료
- (4) 시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
- (5)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
- (6) 팔, 몸통, 다리 운동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
- (7)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
- (8) 팔 보조기, 다리 보조기, 척추 및 머리보조기
- (9) 팔의지(義肢), 다리의지(義肢)
- (10) 기타 의지[의이(義耳), 의비(義鼻), 안면보형물, 구개보형물, 가슴보형물로 한정한다]
- (11) 호흡용 보조기(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)
- (12) 대화 장치, 의사소통용 증폭기(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)
- (13) 헤드폰(텔레비전용, 전화용,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)
- (14) 청각보조기기(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)
- (15) 시각 신호 표시기
- (16)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

- (17)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
- (18) 확대용 돋보기 안경, 렌즈 및 렌즈시스템
- (19)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
- (20)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
- (21)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
- (22) 나침반, 타이머(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)
- (23) 문자판독기
- (24)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
- (25)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
- (26)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
- (27)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
- (28)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
- (29) 침대 및 침대장비(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)
- (30) 목욕통, 목욕의자,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
- (31) 소변 처리기기
- (32) 안경 및 콘택트렌즈(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
- (33)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
- (34) 촉각 화면 표시기
- (35) 특수 키보드(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)
- (36) 프린터(점자프린터,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, 점자라벨기, 점자제판기, 점자인쇄기를 포함한다)
- (37) 사람을 제외한,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(음성저울 및 음성 전자계산기에 한정한다)

(38)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

(39) 음성 화면 표시기
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

다. 「의료기기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의 것

- (1) 인공후두
- (2) 인공달팽이관장치(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)
- (3) 인조인체부분(심장병 환자의 것,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)
- (4) 보청기[인공중이(中耳)를 포함한다]

라. 장애인용 특수차량(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·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)

마.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으로 사용할 특수 의료용도등식품

- (1)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

2. 질병치료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

가.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

- (1) 인공신장기
- (2)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
- (3)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·부자재
- (4)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
- (5)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·부자재
- (6)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·부자재

나.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사용할 물품

- (1) 세레자임 등 고서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
- (2)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
- (3)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
- (4) 월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
- (5)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
- (6)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
- (7)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
- (8)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
- (9)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
- (10)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,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, 전신 중증 근무력증 또는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
- (11)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

3. 장애인 교육용 물품(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- (1) 핸드벨 및 차입벨
- (2) 프리벨
- (3) 몬테소리교구
- (4) 디·엠·엘교구